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1가단317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트윈

담당변호사 박진식, 반형걸

변 론 종 결 2023. 5. 25.

판 결 선 고 2023.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뉴질랜드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5. 체결된 증여계약은 42,7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뉴질랜드인 C(이하 'C'라고 한다)에게 2018. 10. 15.부터 2018. 12. 18.까지 원고가 대납한 주류 외상대금 42,700,000원의 채권이 있다.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9. 2. 15.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여 2019. 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들이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사해행위 당시 마쳐진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금액 중 원고의 채권액 42,7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019. 2. 15.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가. 갑 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① 원고가 C의 주류외상대금을 대납하여 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② C가 2019. 2. 15.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부동산으로 위 증여계약으로 처분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가 그 주장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거나 2019. 2. 15.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됨을 전제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

목 록

1층의 건물의 표시

서울 관악구

서울 동작구 아파트 동

[도로명 주소]

서울 관악구

전유부분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58.59㎡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 관악구		대 41587.7㎡
2. 서울 관악구		대 223.6㎡
3. 서울 관악구		대 34127.5㎡
4. 서울 관악구		대 399.5㎡
5. 서울 관악구		대 13529㎡
6. 서울 관악구		대 294.2㎡
7. 서울 관악구		대 1213.7㎡

대지권의종류 : 소유권

대지권 비율 : 91375.2분의 30.07



